

민주국가에서는 언론이 정치활동에 직접 영향을 주는 여론형성이라는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언론의 기능은 최대한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이 바로 언론자유 문제이며 이 언론의 자유란 언론기관의 자유도 포함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민간의 천부적 권리인 사상표현과 전달의 자유를 의미한다고 보겠다.

현행 우리나라 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비롯하여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 및 검열 금지 및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 보장을 위한 법정주의를 명문화함으로써 모든 국민과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반면,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내재적 한계도 규정해 놓고 있다. 이것이 바로 언론의 책임 문제이다. 언론기관의 책임에 수반하여 개인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기본권의 제반적 효력과 관련하여 간접적용설에 따라 사후책임을 면할 수 없거니와, 「정기 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은 언론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로서 정정보도와 추후보도의 청구 및 정정보도와 추후보도의 게재 또는 방송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언론은 1987년의 6·29 선언을 계기로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언론은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하려고 시도해서도 안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이 선언은 가깝게는 1980년의 언론기본법으로 상징되는 언론의 통제 질서를 깨뜨리는 조치의 시작이었으며, 멀게는 1960년대 이후 끊임없이 통제와 조정의 대상이 되어 온 언론을 되살려 준 계기가 되었다.

어떻든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그를 대체한 법률인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의해 신문 등 정기간행물의 발행요건이 완화됨으로써 비롯된 매체수의 대량증가를 6·29 이전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1993년 3월말 현재 언론매체수는 7,066종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숫자는 6·29 선언 당시의 2,236종보다 3배 이상 폭증한 셈이며, 주간지의 경우는 201종에서 1,928종으로 10배 가까이 증가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일간지는 32종에서 113종으로 늘어났고 월간지 등도 2,003종에서 5,025종으로 늘어난 간행물의 홍수상태가 빚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매체수의 증가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그만큼 국민들이 다양한 정보에 접할 수 있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언론매체의 난립은 어쩔 수 없는 상업주의로 기울어져 과다경쟁을 일삼아 언론윤리가 지켜지지 않을 수 있는 개연성은 더욱 커지고 말았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언론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에 소홀한 가운데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보도를 해 놓고도 정정보도와 사과는커녕 오히려 언론의 자유, 자율경쟁이라는 이름 아래 상업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추측기사나 과장된 보도, 무비판적인 관급기사의 수용, 강제적인 광고게재, 심층·포괄적인 진실보도보다는 단순하고 피상적인 사실보도로 오해의 소지를 남게 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오보를 하는 등 아직도 언론윤리의 위기는 도처에 남아 있다.

이와 같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언론윤리의 위상을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언론매체 스스로의 자정노력, 언론사 스스로의 경영합리화, 장기적인 윤리교육이 지속되어야 한다.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 또는 인격권과의 충돌을 언론의 자율적인 기구에 의해 해결하려는 노력은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 17 조가 「정정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고 정기간행물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자와 언론사간의 분쟁을 중재함으로써 당사자들이 법정을 통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들간의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중재제도는 사법절차의 번잡스러움을 덜어주는 보충기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원의 업무도 덜어주고, 언론사측에도 자기반성과 비용경감이라는 편의를 제공해 주는 제도적 장치라고 평가된다. 또한 이 제도는 정정보도청구를 하는 내용에 관하여 타당성 여부를 판별하면서 정당하고 엄격한 심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정식절차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데도 유용성을 인정 하게 된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기능이 언론사의 자율적 책임을 권고하고 보장하는 기능이다. 중재위원회는 시정을 권고하고 언론사는 이에 기초하여 자율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는 바, 이 시정권고업무는 언론사에 대하여 자율적 책임을 권고하며 보장하는 기능으로 인식될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 그 유용성에 대해서는 이미 정설로 되어 있으며, 설치된 지 13 년이나 흐르는 사이 그 제도상의 문제점이나 활성화를 위한 많은 방안들도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언론중재제도는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그 수단은 정정 보도청구에 대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주장을 중재하는 절차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중재제도는 피신청인인 언론사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여기에 언론사의 책임이 법적 책임 이전의 윤리적 책임으로 인식되는 것이며 그 기초에는 언론의 자유가 담보되어 있는 것이다.

- 서울대 법학과, 단국대 대학원(박사)

- 저술 : 행정법요의, 법학개론, 문화재보호법연구외

- 충북대 법학과 교수,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